

창의적연구진흥사업 연구단 운영세칙

제정 1998. 7. 1

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기초과학연구소규정 및 첨단공학연구소규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설치, 운영되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 및 적용) ① 창의적연구진흥사업연구단(이하 “연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창조적 혁신 역량을 제고시키고 미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독자적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차세대 연구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(STEPI)에서 지정한 연구단을 말한다.

② 본 규정은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본 대학에 설치된 연구단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조직과 기능) ① 연구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연구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는다.

② 연구단에는 연구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단장은 해당 창의사업과제 연구책임자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며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연구원 등) ① 연구단에는 연구원 및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 및 사무원 등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연구원 및 사무원 등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, 세부내용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의 편성과 운용) ① 연구단의 예산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편성 운용한다.

② 예산의 집행 및 운영은 단장의 책임하에 단장의 전결로 집행한다.

제6조(대학의 관리 및 지원) ① 본 대학에서는 연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따른 간접경비(Overhead) 및 유치기관의 과건대가인 개발준비금, 교수인건비를 징수하며, 그 징수비율은 위탁기관에서 인정하는 비율로 한다.

② 대학은 STEPI의 창의과제 운영 취지에 따라 개발준비금 및 교수인건비 징수에 대한 조치로서, 연구단장에게 교수로서 요구되는 의무사항(강의, 봉사활동 등)을 경감한다.

③ 대학은 연구단에 일정기준 이상 배정한 연구공간에 대하여 Space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징수비율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회계관리) ① 연구단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등은 대학본부에서 별도회계 관리하

고, 연구단별로 자금 및 회계증빙을 구분 관리한다.

- ② 연구단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단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.
- ③ 연구단의 연구비는 위탁기관에서 정한 기준(집행내용 및 금액한도 등)에 따라 집행하며, 대학의 일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제규정과 지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④ 단장은 연구단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⑤ 연구단은 대학본부의 합리적인 회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산관리) 연구단의 자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대학 자산으로 관리하고 각 연구단에서는 자산목록을 비치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 연구단에서 구입한 장비 등을 타기관의 참여연구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2.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